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0139 |
|----------|-------|

발의연월일 : 2026. 7. 24.

발 의 자 : 이재정 · 김한규 · 박 정  
최민희 · 백혜련 · 장철민  
조계원 · 김태년 · 정준호  
김문수 · 김원이 · 김 윤  
이정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제 매장에서 주민에게 도서를 판매하고,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을 육성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실제 지역서점과 형식상 요건만 갖춘 납품전문업체 등을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역서점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인

증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검·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인증 등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역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중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점을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지역서점 등의 인증) ①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을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도 이와 같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서점

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라. 그 밖에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지역서점협동조합

③ 제2항에 따라 인증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지역서점 등의 인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이 해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④ 인증취소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간행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 실적을 4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 “시·도지사에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서점등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등”이라 한다)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서점등의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서점등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종전의 인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서점등 인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9.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 9. (현행과 같음)<br>10. “지역서점”이란 <u>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중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점을 말한다.</u> |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u><br>1. <u>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u><br>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u>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u> |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  
할 것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  
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  
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  
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지역서점 등의 인증) ①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을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서점협  
동조합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도  
이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할 수 있  
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서점

가.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  
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

<신 설>

용할 수 있을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라. 그 밖에 운영기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역서점을 운  
영하는 자로 구성된 지역서점  
협동조합

③ 제2항에 따라 인증하는 경  
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의 유효  
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  
께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조의4(지역서점 등의 인증취  
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역서

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  
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  
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협동조  
합이 해산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

<신 설>

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④ 인증취소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5(간행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도서관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이 간행물(전자출판물은 제외한다)을 구매할 때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을 통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 실적을 4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                                                                                                                        |                                                                                                                                                                                                                            |
|------------------------------------------------------------------------------------------------------------------------|----------------------------------------------------------------------------------------------------------------------------------------------------------------------------------------------------------------------------|
|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에게</u> 위임하거나 진흥원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 <p><u>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u></p> <p><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p> <p>-----</p> <p>-----</p> <p>-----<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u>-----</p> <p>-----.</p> |
|------------------------------------------------------------------------------------------------------------------------|----------------------------------------------------------------------------------------------------------------------------------------------------------------------------------------------------------------------------|